

의안번호	제 44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월 일 (제 회)

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10월 5일

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제 44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10월 21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욕구 증가에 맞추어 전용체육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을 유도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 재활 프로그램 인프라를 구축하고, 노후된 근대5종 훈련장을 같은 부지에 재건립하며
- 1984년에 건축되어 「정신보건법」이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청주 의료원 정신병동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유와 사회복귀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기존 병동을 철거하며
- 옥천지역의 의료기기·전자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등 소방수요에 신속한 대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설하는 옥천소방서 청사를 신축하고자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》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340-3 일원(밀레니엄타운 부지내)
- 사업규모
 - 토지매입 : 16,528㎡(세부내역은 추후 결정)
 - 건물신축 : 2종 12,293㎡
 - 장애인스포츠센터 지하1/지상3층 9,917㎡
 - 근대5종훈련장 지하1/지상3층 2,376㎡
- 사업기간 : 2011. 1 ~ 2014.12(4년간)
- 사 업 비 : 18,000백만원(광특회계 4,200 도비 13,800)

《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》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
- 사업규모
 - 정신병동 증축 : 지하1/지상4층 8,600m²
 - 부대시설 확충 : 주차장 지하2층 4,200m², 폐수처리장 1식 450m²
- 사업기간 : 2011.1 ~ 2013.12(3년간)
- 사 업 비 : 20,500백만원(국비 10,250 도비 10,250)

《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 》

- 위 치 :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60-9 일원
- 사업규모
 - 토지매입
 -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60-9 2,734m²
 -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산 13-8 448m²
 - 건물신축 : 지하1/지상3층 2,970m²
- 사업기간 : 2011. 1 ~ 2012.12(2년간)
- 사 업 비 : 4,561백만원

□ 재산의 처분

《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철거 》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
- 철거규모 : 2,223.5m²(정신병동 2,145.5m² 충북폭력방지센터 78m²)
- 철거시기 : 2013. 7월이후(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이후)
- 사 업 비 : 400백만원(국비 200, 도비 200)

3.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

4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, 제14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

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천원)	취 득 사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,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2 건	19,710.0	4,562,000				
	건물	3 건	23,863.0	34,759,000				
	기타	1 건	4,650.0	3,740,000				
1	토지	청주 상당 오동 340-3 말레니엄타운 부지	16,528.0	4,000,000	2011	장애인스포츠 센터 신축 부지	(재)충북개 발공사	
	건물	"	9,917.0	12,000,000	2011~ 2014	장애인스포츠 센터 건립	신 축	
		"	2,376.0	2,000,000	2011~ 2012	근대5중 훈련장 이전	신 축	
	기타							
2	토지							
	건물	청주 흥덕 사직 554-6	8,600.0	16,760,000	2011~ 2013	청주의료원 정신 병동 시설개선	증 축	
	기타	"	4,200.0	3,200,000	2011~ 2013	청주의료원 주치장 확충	증 축	
		"	450.0	540,000	2011~ 2013	청주의료원폐수 처리장 증설	증 축	
3	토지	옥천 옥천 문정 260-9 등 2필지	3,182.0	562,000	2011	신설 옥천소방서 청사 신축부지	국 가 (국토해양부)	
	건물	"	2,970.0	3,999,000	2011~ 2012	신설 옥천소방서 청사 신축	신 축	
	기타							
4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5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201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(7-3)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처 분 시 기	처 분 사 유	처분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청주 흥덕 사직 554-6	2,223.5	1,515,830	2013	청주의료원 구정신병동 철거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1	토지							
	건물	청주 흥덕 사직 554-6	2,223.5	1,515,830	2013	청주의료원 구정신병동철거	충청북도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관계법령발취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</p>	<p>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 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p>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</p> <p>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</p> <p>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</p> <p>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</p> <p>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</p> <p>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</p>

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】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
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법 제 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 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 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)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 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 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 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 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